

# 11.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8-200호 1998. 5. 20

## 주요 골자

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, 보상업무에 관해 전문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용지 취득 및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## 개정 이유

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업무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